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82 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이인영·박상혁·김용만

한정애 • 이정문 • 강준현

전진숙 · 김영진 · 백승아

이연희·장철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총 주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,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주식백지신탁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쟁송 기간에는 정상적인 직위 유지 및 관련성이 있는 직무 취급이 가능하므로, 공직 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주식백지신탁 및 이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

자가 그 절차가 끝나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(안 제14조의11제5호 신설).

- 나.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결정을 내렸을 때, 그 결정의 청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(안 제14조의14제3항 등).
- 다.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(안 제24조 및 제24조의 2).

법률 제 호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11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14조의5제6항(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,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: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통보받은 날부터 행정쟁송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

제14조의14의 제목을 "(주식의 매각·신탁 사실 및 직무관련성 심사결과의 공개)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"로 한다.

③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 결정을 내린 주식백지 신탁위원회는 해당 심사의 청구내용과 그 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"1년"을 "3년"으로, "1천만원"을 "3천만원"으로 한다. 제24조의2 중 "1년"을 "3년"으로, "1천만원"을 "3천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 처벌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 및
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
탁을 거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4조의11(이해충돌 직무에 대 제14조의11(이해충돌 직무에 대 한 관여 금지) ① 공개대상자 한 관여 금지) ① -----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 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 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, 지시,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 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. 1. ~ 4. (생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5. 제14조의5제6항(제14조의6제 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주식백지신 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,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 우: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로부터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을 통보받은 날부터 행정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② ~ ④ (생 략)

제14조의14(<u>주식의 매각 또는 신</u> <u>탁 사실의 공개</u>) ①·② (생 략)

<신 설>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 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 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제24조(재산등록 거부의 죄)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<u>1년</u>이하의 징역 또는 <u>1천만원</u>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(생략)

제24조의2(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)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 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

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14(주식의 매각・신탁
사실 및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
<u>의 공개</u>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주
식의 직무관련성 결정을 내린
주식백지 신탁위원회는 해당
심사의 청구내용과 그 심사결
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
.
제24조(재산등록 거부의 죄) ① -
<u>3년</u>
<u>3천만원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24조의2(주식백지신탁 거부의
죄)

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
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
<u>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<u>1천만원</u>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	- <u>3</u>
<u>년</u> <u>3천만</u>	원